

참고6 가구원 정보제공 제외 심사 매뉴얼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의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장학금신청인(대학원생)의 요청에 따라 동의대상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 제외 가능 여부 심사
 - 업무처리 근거 및 기준: 매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 업무 프로세스

구분	내용	수행주체	채널
심사 신청	참고7 <가구원 제외요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담당자에 제출	대학원생	소속 법전원
↓			
제외 심사	매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제외 신청에 대한 심사 수행	법전원 담당자	법전원
↓			
기각	기각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 ※ 단, 제외 신청서 보관		
↓			
각하	각하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 ※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미비점 보완 요구	법전원 담당자	법전원
↓			
용인	참고8 <가구원 제외 심사 확인서> 작성 및 교부(담당자→신청인)		
↓			
제외 요청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접수 활성화 요청	대학원생	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제외 접수	법전원 담당자로부터 교부 받은 확인서를 업로드하여 최종접수(익일 정상접수여부 확인)	대학원생	재단 홈페이지 (kosaf.go.kr)
↓			
제외 처리	신청인의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처리 (접수완료 후 평균 2영업일 이내 처리)	재단 담당자	재단

※ 소득·재산 조사기간(약 8주) 및 최신화심사 소요시간(약 1개월)을 고려하여 법전원 담당자의 신속한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 업무수행 필요 (대학원생의 증빙서류 제출 기한 설정 등)

□ 가구원 제외 심사 기준

가구원	학생	내용	주요 제출서류
이혼	미혼	(부모 이혼) 신청일 이전 이혼 후 관계 단절 된 부 또는 모 제외 ○ 별거 또는 사실이혼 불인정 ○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이혼 소송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부모 이혼으로 인정(소장사본으로 단절 인정) ※ 이혼숙려제인 경우 소송취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 ○ 학자금 신청일 이전 협의 또는 재판 이혼이 결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 상 관계 정리가 완료되었으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가 정리되지 않아 이혼 전과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혼으로 인정 다만, 이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부양관계가 확인 될 경우 이혼 불인정,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확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의 이혼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 관계 단절 시, 경제적 부양관계 여부 확인) • 필요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재판이혼 중인 경우) 소장 사본
	기혼	(학생 이혼) 신청일 이전 이혼 후 관계 단절된 배우자 제외 ○ 별거 또는 사실이혼 불인정 ○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이혼 소송(혼인무효소송 포함)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학생 이혼으로 인정(소장사본으로 단절 인정) ※ 이혼숙려제인 경우 이혼취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 ○ 학자금 신청일 이전 협의 또는 재판 이혼이 결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 상 관계 정리가 완료되었으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가 정리 되지 않아 이혼 전과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혼으로 인정 다만, 이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부양관계가 확인 될 경우 이혼 불인정,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확인	• 학생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학생본인의 이혼 확인) •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재판이혼 중인 경우) 소장 사본
사망	미혼	(부모 사망) 사망한 부모 제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의료기관), 제적등본 (→ 부모의 사망 확인용)
	기혼	(학생 배우자 사망) 배우자 제외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실종 (가출· 행방불명 포함)	미혼	(부모 실종) 실종상태인 부모 제외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법원)
	기혼	(학생 배우자 실종) 실종상태인 배우자 제외	
(고유식별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	미혼	(부모 재외국민·외국인)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부모 제외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외국인은 가구원에 포함	①여권사본 ②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등 중 택 1
	기혼	(학생 배우자 재외국민·외국인)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배우자 제외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외국인은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	학생	내용	주요 제출서류
부양 관계 단절	공통	(거소불명(말소)) 거소불명(말소)인 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 ※ ‘해외이주말소’는 가구원 제외대상 아님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또는 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미혼	(부모 이혼 후 재혼) 부(모) 재혼 시, 계모(계부)를 생존(부양관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부(모)가 계모(부)와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관계 단절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학생 주민등록표(등본) (→ 계모(계부) 관계단절 주장 시, 경제적 부양관계 여부 확인용)
	공통	(기타) i) 그 외 가구원 관계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연락두절 및 생사확인불가, 가정폭력) ○ 독립 또는 단순 관계악화로 인한 부양관계 단절 주장 불인정 ○ 다만, 가구원의 폭력 등으로 부양관계 단절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신고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 제출 시 인정 가능 ii) 공적자료와 실질적(생물학적) 부모가 다를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확인 후 인정 : 인정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①,② 모두 제출 시에만 인정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가족관계 확인 공증각서(녹취 추가 필요) 또는 실질적 부모와 학생 본인 간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판결문*, 유전자 확인서* 등)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 판결문, 유전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족부양관계가 인정되었고, 이후 가족부양관계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이후 학기에 해당 서류 재제출 불필요	(공통) • 학생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 제외요청 시 학생의 주민등록표(초본)제출 (가정폭력) • 신고접수증, 가정폭력 사건 처분결과증명서, 가정폭력 소장 사본, 사건사실확인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 가정폭력 상담서 등 ※ 가정폭력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단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입증 시 당해 학기에 한해 제외 가능, 다음 학기부터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단절 확인 필수

- ※ 사유적합성 및 증빙서류 확인(통화이력, 동일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내역 참고)
- ※ 가족관계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상 가족관계로도 대체 가능
- ※ 추가 확인 필요 시 학생·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양관계확인] 확인
- ※ 군 의무복무 중인 가구원의 경우 훈련소 입소, 특별 또는 장기 훈련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별도 증빙을 통해 가구원 제외 가능(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불가)
- ※ 과거 동의내역이 있는 가구원을 ‘실종, 연락두절 또는 생사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제외를 요청할 경우 ‘가구원 인적사항, 사유, 기간,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공증각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제외 가능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가 처리 기준】

구분	내용	주요 제출서류
피성년후견인 (구. 금치산/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이 정보제공 동의 처리 ※ 혼수상태, 치매, 조현병, 사지마비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등기된 성년후견인이 정보제공 동의	① (부모 또는 배우자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친권, 후견)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후견인 신분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상 가구원 서명란에 성년후견인이 서명하여 제출

□ 가구원 오프라인 정보제공 동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직접방문)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 동의 대상자(부모·배우자)는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동의서 접수 가능(장학재단법 시행령 제 33조의 5 제 2항)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으로 인해 공동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 가구원 요청 시 오프라인 동의 처리

- 오프라인 동의는 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 후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동의서 접수

참고7

가구원 제외요청서

(※ 법학전문대학원 제출용)

가구원 제외요청서

신청인 (대학원생)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제외가구원(1) ※ 대상이 1명일 경우에 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대학원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 ____월 이후 신청인(대학원생)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음 <아래부터 상세 사유 기술>		
제외가구원(2) ※ 대상이 2명일 경우에 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주소 불명시 생략)		학생과의 관계
	제외 요청 사유		
	상기인은 신청인(대학원생)과 ____년 ____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____년 ____월 이후 신청인(대학원생)과 경제적 부양·피부양 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음 <아래부터 상세 사유 기술>		

증빙서류 가구원 제외 관련 증빙서류 (예: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청인(대학원생)은 상기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한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용의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